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지역의 호우 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7급 12명)을 증원하고,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성과관리를 위해 이번 개정으로 증원하는 인력 12명(7급 12명)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248호) 개정으로 수도권 지역의 호우 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위해 증원한 4명(7급 4명)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597호) 개정으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의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위해 증원한 4명(7급 4명)에 대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능과 정원에 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광주지방기상청 관리운영직(기계운영서기보)의 자연 감소로 인한 인력 공백을 일반직(행정·기술직)으로 전환하여 충원할 수 있도록 하며,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한 정원 1명(6급)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5. 00. ~ 5.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2호의2 중 “발송·관리(수도권기상청 및 대구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발송·관리”로 한다.

제12조제3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관할지역 내 호우에 관한 긴급재난문자 발송·관리

제8장(제19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19조(평가대상 정원) 기상청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6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29”를 각각 “541”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06”을 “118”로,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83”을 “84”로 하고, “기계운영서기보 1”를 삭제한다.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23”을 각각 “535”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18”을 “130”으로,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

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67”을 “68”로 하고, “기계운영서기보 1”를 삭제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환경부령 제98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중 “2025년 6월 17일”을 “2027년 6월 17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제19조 관련)

1. 기상청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조직	정원	평가기간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업무 (수도권기상청, 대구지방기상청)	8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업무 (대전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전주기상지청, 청주기상지청)	12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지방기상청) ① ~ ④ (생략) ⑤ 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략) 2의2. 관할지역 내 호우에 관한 긴급재난문자 <u>발송·관리</u> (수도권기상청 및 대구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3. ~ 6. (생략) ⑥·⑦ (생략)	제11조(지방기상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 ----- <u>발송·관리</u> 3. ~ 6.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1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①·② (생략) ③ 관측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 11. (생략) ④ ~ ⑥ (생략) <u><신설></u> <u><신설></u>	제1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관할지역 내 호우에 관한 긴급재난문자 <u>발송·관리</u> 6. ~ 11.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u>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u> <u>제19조(평가대상 정원) 기상청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u>

환경부령 제98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환경부령 제98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5의3의 정원 1명(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u>2025년 6월 17일까지</u>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 ----- ----- ----- ----- <u>2027년 6월 17일</u>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6]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529</u>	<u>541</u>	+12
일반직 계	<u>529</u>	<u>541</u>	+12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106</u>	<u>118</u>	+12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83</u>	<u>84</u>	+1
·	·	·	
·	·	·	
<u>기계운영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7]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23</u>	<u>535</u>	+12
일반직 계	<u>523</u>	<u>535</u>	+12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 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 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118</u>	<u>130</u>	+12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 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 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67</u>	<u>68</u>	+1
·	·	·	
·	·	·	
<u>기계운영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	·	·	